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3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이광희 · 김 윤 · 이재강
채현일 · 허종식 · 박성준
윤종균 · 김우영 · 이주희
양문석 · 김남근 · 허 영
안태준 · 박홍배 · 박해철
문금주 · 장종태 · 임미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이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 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 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

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범죄
2.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u> <u>1. 「의료법」 제4조의3제1항 · 제2항, 제33조제2항 · 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범죄</u> <u>2. 「약사법」 제6조제3항 · 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u>

들어야 한다.